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가단2046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3. 4.

판 결 선 고 2022. 4. 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2019. 3. 7.자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13. 접수 제10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6년경 D를 상대로 카드론 대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72389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6. 위 법원으로부터 'D는 E에 7,418,151원 및 그중 7,097,593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8. 확정되었다.

나. E는 2018. 7. 5.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E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해 8. 27.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다. D의 아버지 F는 2013. 11. 17.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자녀인 피고와 G, D, H이 망인을 각 1/4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이후 2019. 3. 7. 피고와 D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13. 접수 제10237호로 2013. 11.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E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별다른 재산 없이 원고에 대한 채무 등 부채만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한 것으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년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여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파킨슨병 또는 뇌변병과 치매 증상까지 있던 부모님을 간병하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의 가족회의 끝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10년간 간병을 한 피고와 처 I의 노고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 당시 피고로서는 D의 채무관계를 전혀 몰랐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처인 요양보호사 I와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과 어머니 J를 모시고 간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와 D의 가족관계,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D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당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위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13. 접수 제10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물의 내역 : 벽돌조 스라부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1층 66.33㎡

2층 66.33㎡

지층 70.65㎡

(내역 : 지층 주택임)

2.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 133㎡

